

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☐ 재안이유

영농의 기계화 추세에 따라 농기계의 보유실태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농기계 수리센터를 관리,운영하는 인력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감축됨에 따라 제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어 농기계관리 및 교육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[1996. 3. 1] [조례 제140호]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장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할
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수리장비 및 시설)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
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.

제 3 조(기능) ①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
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.

②농기계수리는 읍, 면, 동, 리 자연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③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.

④농업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.

제 4 조(관리) ①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한다.

②농기계수리센터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, 농기계교관, 운전기사로 편성한다.

제 5 조(부속품대 및 수수료) ①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과 그 부속품
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
만, 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
의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.

③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.

④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 6 조(망실 또는 훼손)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
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